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8. 19.
부안군 재무관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12,940,135 원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향교지구 복합건강증진센터 조성사업 인테리어 건축공사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지상3층/연면적 780.76㎡ - 사업위치 : 부안군 부안을 서외리 354-1번지 외 3필지 일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75일		
개찰일시	2026. 8. 25. 12:00 이후	입찰등록기간	2026. 8. 19. 19:00 ~ 2026. 8. 25. 11:00
사업 예산액	금293,733,000원 ※도급액:금293,733,000원	기 초 금 액	금293,733,000원
		추 정 가 격	금267,030,000원
		부가가치세	금26,703,000원
		관 소 계	금 - 원
		도급자설치	금 - 원
		관급자설치	금 - 원
		기 타	금 - 원
현 장 설 명	없 음	개찰 장 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 063-580-4271	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새만금도시과 도시재생팀 063-580-4872
---------	-------------------------	---------------------	------------------------------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같습니다.

2. 수의견적 및 계약방법

-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수의견적제출(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진출허용 공사입니다.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3. 견적제출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및 추정가격

공사업종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공급가액)		도급예정액		비고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건축공사업	293,733,000	100	267,030,000	100	293,733,000	100	
실내건축공사업	217,398,000	74	197,634,545	74	217,398,000	7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76,335,000	26	69,395,455	26	76,335,000	26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 도급예정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라. 본 공사는 종합공사를 전문공사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써 전문공사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 시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의 사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의계약 결정사유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우리군은 각호의 소속 (고위)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법인·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하한을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는 **부안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붙임1)**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 관련 유의사항

- 가. 전자입찰 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및 본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1) 본 공사의 시방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다.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할 사항 및 **사후정산(증빙확인)**

하는 항목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 전 관 리비	품 질 관 리비	합 계
2,265,708원	2,993,634원	297,714원	1,449,549원	5,933,530원	- 원	- 원	12,940,135원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부영수증을 공사대금 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
 - 2)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 3) 정산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기 산출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도 함께 감액지급
- 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험료납부 후 기성 및 준공 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므로 착공계 제출 시까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또는 적용제외·비대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복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 사. **계약상대자는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가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는 부안군 관할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사인력(일용 노무), 장비는 가급적 부안군 관내 자재 및 공사인력,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 표준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7.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8.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약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약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 결제 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청구기준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원도급과 하도급 전체 대상이며, 원도급사 직접 시공 공사도 포함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발주기관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청구내역을 별도 작성하지 않고 원.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청구 불가**

라. 노무비 및 자재.장비 대금 청구 내역에는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지급대상자 개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000외 2인과 같이 다수 인원을 1개 항목으로 처리 불가

마.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운영현황 등 대금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 및 자재.장비 대금에 대한 ‘수령계좌번호’는 지급대상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이하 ‘본인계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신 수령할 타인의 계좌 (이하 ‘타인

계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 타인계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카.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용)

* 위에 따라 지급된 노무비 내역에 대하여는 전자대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가.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릅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르며 단순오기 사항이 있을 시에는 현행법령에 의거 계약절차를 진행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안군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063-480-42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안내

가. 계약 진행 시 필요한 서류 및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는 부안군 계약정보시스템(www.gyeyak.buan.go.kr)의 「법령 및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안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안군 재무관 귀하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안군 재무관 귀하